

제43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31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6)
2.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1)
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2)
5.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6)
6.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5)
7.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20)
8.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7)
9.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1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
1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8)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8)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7)
1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4)
1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9)
1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0)
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6)
1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3)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8)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4)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6)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5)
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0)
24.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7)
2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 번호 2205984)
26.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1)
2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9)
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0)
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1)

상정된 안건

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6) 3
2.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3
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1) 3
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2) 3
5.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6) 3
6.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5) 3
7.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20) 3
8.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7) 3
9.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3
1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 3
1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8) 3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8) 3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7) 3
1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4) 3
1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9) 3
1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0) 3
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6) 3
1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3) 3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8) 3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4) 3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6) 3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5) 3
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0) 3
24.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7) 4
2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4) 4

26.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11)	4
2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09)	4

(10시02분 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차관과 인사혁신처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6)
2.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1)
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2)
5.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6)
6.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5)
7.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20)
8.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7)
9.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1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
1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8)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98)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7)
1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4)
1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9)
1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0)
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6)
1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3)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8)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4)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6)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5)
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60)

24.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7)

2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4)

26.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1)

2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9)

(10시03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총 2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안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충실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했던 거라서요.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지난번 심사자료 118쪽까지 보고드리고 심사를 하였고요.

오늘은 119쪽, 28번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특징과 관련해서 잠깐 보완말씀 드리면 이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3관에 대도시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요. 현재는 이 균발법 제59조에서 ‘특례시의 사무 특례’ 그래 가지고 1호부터 한 13호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대도시 특례를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발굴해서 이걸 계속 특례를 추가해야 되는 의무를 제58조에서도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계속 이 특례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발굴 결과를 모아서 정부에서 별도법으로, 특례시 지원 법안으로 빼내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좀 더 추가되는 특례들을 발굴해서 안을 내신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심사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특례시에 특례를 주는 것과 관련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 건들은 대체적으로 특례를 부여하자고, 심의 결과가 그러한 내용들은 수용하는 형태로 이 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결과 수용

하지 않기로 하거나 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못한 특례들은 자료상에 신중검토로 제시돼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회의에서 심사할 때 대체적으로 수용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돼 있었고요. 오늘 119쪽부터 심사되는 특례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신중검토 사항만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맨 뒤에 행안부와 관련되는 행정 특례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수용 의견이 몇 건이 있는데 타 부처의 권한 이양과 관련되는 특례들은 대체적으로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상으로 119쪽부터 178쪽까지의 내용들은 전부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수용하기로 하거나 심의 결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중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어서 제가 꼭지들만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의 28번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하도록 하는 건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이고요.

다음, 120쪽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협의에 관한 업무 이것을 특례시장에게 이양해 달라는 것도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다음, 121쪽의 30번 물류정책기본법상 업무인데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현황조사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것과 물류인력양성 사무를 이양하도록 해 달라는 건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이고요.

다음, 123쪽의 31번 사항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의 말소 및 보조금의 지원·환수 등에 관한 업무인데요. 이것도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건데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그리고 125쪽의 32번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련해서 특례시장이 지방의회의 승인받아서 지역개발채권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도 신중검토 사항이고요.

다음, 126쪽의 33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설치·운영·구성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해 달라는 것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128쪽의 34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교육훈련기관 설치·운영 및 교육훈련 실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해 달라는 것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그리고 129쪽, 35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인데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 수립 시 협의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해 달라는 것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획 수립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또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정 신청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장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시행 등의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해 달라는 내용들인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133쪽입니다.

36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업무인데요. 이것도 특례시장에게 이양해 달라는 내용인데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134쪽 37번 사항입니다.

채납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심의와 의결은 주기로 해 났는데 이 규정 사항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고치는 사항이어서 이 법 개정 사항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신중검토이고요.

다음, 136쪽 38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인데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제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요청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요청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해 달라는 건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138쪽 39번 하천법상의 업무인데요.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의 관리 및 폐천 부지 등의 관리 사무와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협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인가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해 달라는 건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140쪽 40번 사항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이양해 달라는 건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이고요.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41번 사항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건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이고요.

다음, 142쪽 42번 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 전력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해제 사무, 특화단지육성시책 수립 시 협의 사무, 특화단지육성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143쪽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고 특례시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건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144쪽 4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업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및 축소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토록 해 달라는 건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이고요.

146쪽입니다.

45번 사항 광역소하천정비종합계획 심의 및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려는 건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147쪽 46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토록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이고요.

다음, 148쪽 47번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해 달라는 것도 신중검토 사항이고.

다음, 149쪽 48번 특례시장에게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이양토록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49번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취소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이양토록 하려는 안인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50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업무인데요. 그 법에 따른 사업장 설치의 허가·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의 통지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토록 하려는 안인데 이 안도 신중검토 사항이고요.

다음, 155쪽입니다.

51번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접수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토록 하려는 것인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157쪽 52번 전기사업법상에 전기사업 허가, 준비기간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여러 가지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이양토록 하려는 안인데 이 안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159쪽 53번 사항입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신청을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54번 마리아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변경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안인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55번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안인데요. 이 사항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56번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 선정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안인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57번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업무들인데요. 촉진지구 지정 및 지정 해제, 지구계획 승인, 허가 또는 승인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명령 등에 대한 감독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안인데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169쪽 58번입니다.

사방사업법상에 사방사업의 시행,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국가사방사업에 대한 조사·측량을 위한 토지 출입·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와 이에 따른 손실 보상,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사방시설로 인한 수익의 교부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안인데 이것도 신중검토 사항이고요.

다음, 171쪽입니다.

59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안인데요. 이 또한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173쪽 60번 사항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안인데 이 또한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175쪽 61번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공업지역 지정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안인데요. 이 또한 신중검토 사항이고요.

176쪽입니다.

영향평가 규정인데요. 행안부장관이 특례시의 행·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상생발전방안에 반영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안인데 이게 특례시의 특례 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상생협력 정책의 프로세스를 더 좋게 하려는 취지에서는 좋은데요. 특례의 효과성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나 도 및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주로 타 부처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놔둬야 된다고 결정한 사항들을 보고드렸고요.

179쪽부터는 수용 사항들이 있는 사항들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사.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등인데요.

○소위원장 윤건영 수석전문위원님, 여기서 끊어서……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여기까지 할까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앞서 수석께서 이 법안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신중검토 의견인 거지요? 따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것과 정부 입장은 동일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설명드린다면, 지난번 소위 때까지는 특례시 지원법 제정안에 정부안도 같이 와 있어서 지난 소위 때 논의한 건 대부분 정부안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된 거라서 수용이 많았던 거고요. 오늘 논의되는 것은 협의가 안 됐거나 특히 특례를 줄 때 이걸 좀 다른 게 보통 우리가 권한을 이양하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은 대부분 시도지사의 권한을 100만 이하에 특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더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불수용도 있고요.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 의원님들 안에 좀 담겨 있어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또 해서 다음번에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일부는 현재 분권법이나 개별법에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제처에서 조문 형평상 여기다가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신중검토, 조금 전에 수석께서 발제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행안부가 우리 각 지역에, 이것 특례시도 그 주변에서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거점도시가 될 텐데요. 행안부가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의지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거점도시가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기후에너지부나 아니면 국토부, 위에 산림청 관련된 일들도 다 캔슬이 많이 되고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아직 검토 안한 게, 지금 안 했다 하는 그런 면에서 그냥 왕창 들어내는데 이게 법을 만들 때 좀 디테일해야지 현장감이 살아나고 현장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특례시가 됐을 때 법적

으로 우리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감이 좀 살아나려면 디테일해야 되는데 굉장히 뭉뚱 들 어내는 감이 있어서 행안부가 노력을 좀 덜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79쪽입니다.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등인데 이게 정부안과 여러 의원님들 안에 행·재정적 특별지 원하고 재정특례, 지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 지방세특례 등의 규정사항을 다 담고 있는데 요. 이 중에서 행·재정적 지원 그러니까 정부안에 들어 있는 내용 정도로는 하지만 그 이상의 재정특례나 지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나 지방세특례를 두는 것은 다른 특별법의 기준이나 이것과 감안해서 포함하기 좀 어려운 부분으로, 일반적인 정부안처럼 행·재정 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지원 규정을 두고 나머지 지원 조항들은 수정안에 포함하지 않는 형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음, 189쪽입니다.

특례 부여 및 지원과 관련되는 건데요. 이게 특례시장이 행안부장관에게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례를 부 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안은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이고 수용할 수 있는데, 다만 지방 시대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추가하는 형태로 하는 게 기존의 특례 발굴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어떤 기존 절차 프로세스와 일관성을 맞추는 측면에서 괜찮고요.

그다음에 행·재정적 지원 규정이 김성희 의원님하고 김승원 의원님 안에 있는데 아까 이 이전 조항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행·재정적 지원 조항을 그 앞 조항에서 포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히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마련돼 있어서 그렇게 보시 면 되겠고요.

다음, 193쪽입니다.

자. 사무특례 협약인데요. 이거는 김승원·이상식 의원님 안에서 특례시와 도가 지방의 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장관이 특례시와 도의 사 무특례 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인데요. 이게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권한 배분과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특례시와 도 간에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좀 고려해서 결정하실 사안인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 배분은 법 령에 근거를 두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무 배분을 조정하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96쪽 예비특례시인데요. 인구소멸지역도 이제 예비로 해 달라는 안도 많 은데 그런 유사 차원인데, 이게 특례시가 되기 위한 인구 요건이 있는데 거기 충족하지 못하는 근접한 대도시에 대해서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인데 이것도 예비특례시 지정 효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행안부에서 는 실질적인 특례 및 효과가 없다라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건입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연구기관의 지정 건인데요. 이거는 김승원·이상식 의원님 안에서 특례시 관련 정책·지

원방안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기관·연구소·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특례시 관련한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괜찮은 안이고 행안부에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건인데요. 김승원·이상식 의원님 안에서 특례시장이 소속 공무원 정수의 5% 범위에서 타 지자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사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행안부 쪽에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202쪽 파.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인데요.

권칠승·허성무 의원안 및 정부안에서 특례시의 부시장을 2명으로 하도록 하고 특례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데 이것도 현재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서 부시장 2명이 돼 있는 조항을 이쪽으로 옮겨 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일반구에 부구청장을 둘 수 있도록 허성무 의원님 안에서만 제안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일반구의 역할과 권한의 차이를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인데 행안부에서는 일반구에 부구청장을 두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하.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 수립 특례 사항인데요. 김종양 의원님 안에서 행안부장관이 지방공무원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례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례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데, 이것도 행안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는 것인데 별도 교육훈련과정 수립 없이 행안부의 교육훈련과정을 따르고 있어서 특례시에 대해서만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두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권한의 위임 부분인데요. 다수의 의원님 안에서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도지사·특례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데 이게 제정안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조직법 제6조의 일반적 위임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도지사·특례시장에게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아울러 고려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입니다. 210쪽인데요.

시행일은 6개월 안과 1년이 있는데 정부안을 포함한 대다수의 의원님이 1년을 두셔서, 사무특례 이양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절차들을 준비하는 데 한 1년이 경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준비행위도 여기에 중앙행정기관·도·특례시의 사전준비행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부안이나 이 준비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의원님 안처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제59조 특례시의

사무특례하고 보조기관 아까 부시장 2명 둔다는 걸 이쪽에 옮겨 왔기 때문에 그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는 안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규정상 경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조항은 받지 않는 걸로 해서 심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수정안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정부는 모두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179쪽, 특례시 특별지원 같은 경우 재정특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일반적인 행·재정 지원에 대해서만 수용하고 나머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특회계, 지방세 특례 관련해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게 관계부처고, 특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특례시가 경기도하고 경남도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도 의견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의견,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189쪽도 의원님들 안에 동의하는데, 다만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쳐서 행안부장관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수정수용 입장이고 198쪽, 200쪽, 210쪽은 수용 의견이고요. 나머지는 신중검토 의견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모경종 위원 189페이지 특례 부여 및 지원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가 수정의견인 것 같은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를 하면 의결 권한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심의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수석님?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이나 수석전문위원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심의 의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모경종 위원 만약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그다음은 진행이 안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래서 아까 179쪽부터 된 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거기에도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불수용하거나 이러면 진행이 안 돼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경기도하고 경남도가 두 군데가 있어서 그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옥상옥처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또는 경상남도에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해 주시면 행안부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방시대위원회의 설립 취지라든지 이런 목표가 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양 특례라든지 권한 이양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약간 무력, 형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제가 경기도에서 행정 경험을 해 봤을 때 소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바로 협의 이후에 뭔가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행정안전부에서 판

단을 하는 것이라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 자체는 불필요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면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58조·59조·60조·61조 이렇게 해서 대도시에 대한 특례 관련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 발굴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제에 따라서 지금 행안부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계속 발굴하고 또 관계부처 의견을 다……

이게 행안부의 권한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타 부처의 권한을 가져와야 되는 것도 있고 시도지사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주는 거지만 그 시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 조정이 필요한 거지요. 그 절차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경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196페이지의 예비특례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도 그렇고 그전에 있었던 특자도도 그렇고 거기서 벗어난 동네가 있지요. 충청북도는 아무것도 혜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특례시예요, 특례시. 그런데 88만 명이라는 이유로 청주가 포함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이번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서도 이 정도 특례는 청주시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충북이 얻어야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주도 이 안에 포함되고 천안도 포함됩니다만 전주는 전주대로 천안은 천안대로 특례적 또는 특수한 지위에서의 도시 발전을 위한 지점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충북의 경우는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비특례시와 관련해서 지정 시의 효과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빠져 있는데 저는 예비특례의 범위를 넓혀서라도 행안부에서 배려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100만으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금 경기도에만 4개가 있고 창원에 하나가 있는데 창원도 인구 100만을 유지하기가 지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례시 기준 자체를 인구 100만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아직 저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70만이나 80만으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 많은 특례시가 돼서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더 활성화되고 특례시 지원이 좀 제도적으로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고민·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 특례시가 만들어질 때 100만 인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50만이 넘는 도시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대도시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2만, 3만인 도시가 똑같은 법에 돼 있다는 게 형평에 맞습니까? 그게 공정한 겁니까? 지방자치법에 똑같이 걸려 있어요. 작으면 작아서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고 크면 커서 문제가 돼서 특례시가 만들어진 건데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100만 명이 넘지 못하는 칠팔십만이 되는 도시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에 대한 대안도 저는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례시에 예비특례시 규정을 뒤서 예비특례시 지정 시의 효과를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예비특례시와 관련된 법안을 제가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고민해 주시면 되고 저희 행안부가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협의해서 연구기관하고 해서 특례시 제도를 좀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차관님,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행안부의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사고의 현장감이 떨어진다.

수도권에서는 예비특례시 70~80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면 50만 도시도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 딱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특례시를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 거점도시들을 조금 더 키워서 인구 소멸도 막고 그 주변의 도시들을 이끌어 가는 그런 지방화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원화를 해야 됩니다. 수도권 특례시를 100만으로 하면 수도권 그 이외의 지역은 여기 규정 하나만 더 넣어서 지방에는 50만을 특례시로 한다 하고…… 차관님, 지금 수도권 제외하면 70~80만 정도 되는 도시 몇 개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냥 예를 든 거고요.

이번에 행정통합 시도 할 때도 논의가 좀 됐었고 제 기억에는 대전·충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시군 기초정부도 통합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인구는 지금 됐지만 전주·완주라든지 이런 게 합쳐지면 인구 한 70만 정도나 60만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례를 드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원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 규정을 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서 수도권이 100만이 특례시면 비수도권은 50만이 특례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혜택은 똑같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가 돼야지 지방의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이 특례시 제도에 대해서 보완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부처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행안위에서도 입법정책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앞서 특례시 했고요. 저희 행안부 소관 법이 크게……

제가 지역특별법 할 때 별지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었는데 지방자치분권 균발법이 굉장히 균형발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크게 세 카테고리로 지방 분권하고 특례를 주는 지역통합법, 전북, 강원 그다음에 전남·광주까지 포함된 그런 형태의 법이 하나 있고 그 중간에 특정 지역 또는 중부내륙 이렇게 권역을 묶든지 또는 특정 도시만 해서 그 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특례 규정을 담은 법안,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소외지역 그다음에 취약지역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법들, 섬 지역 그다음에 접경지역 이런 법들이 저희 소관 법 중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그중에 하나 저희 오늘 하는 게 섬 발전 촉진법인데요. 이것도 그동안 특례 규정들을 쭉 많이 심사한 이력들이 있으니까 섬 지역에 대해서도 특례들을 조금 더 추가하려는 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질상 관계부처 권한과 관련되는 중앙부처의 이견을 들어야 되는 절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개정안들이고 그 의견상 관계부처가 이 권한은 지역적 형평성이나 전국적 조정 차원에서 중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일관된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특례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신중검토 사항이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섬 지역에 대해서는 특례를 줘도 되겠다 정도는 수용하는 형태로 해서 부처 간 의견수렴 결과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반영하고 부처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수정안으로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일괄적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자료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면 2쪽에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제도로 두고 실시계획 승인받은 경우에는 각종 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조항들을 쭉 두려고 하는 안인데요. 여기에서 일부 부처는 수용이고 일부 부처는 수용하지 않고 수정수용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최형두 의원안과 서삼석 의원님이 내셨는데 이것은 두 쪽지인데 이것은 본 자료에서 설명드리고, 최형두 의원님께서 섬발전촉진구역 지정 제도를 만들고 섬발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관한 것, 산지관리에 관한 것, 개발이익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에 특례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안인데요.

대체적으로 섬발전촉진구역 지정 및 특례 신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이 특례들은 좀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이견이 제시된 건이어서 그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규정 신설 건인데요.

이 건은 관련 부처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일부 인허가 의제 규정에 대해서는 수용해서 수용된 것 외에 신중검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6쪽의 박스 부분을 보시면 안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국토부에서는 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전체를 의제하기는 좀 어렵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 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마목의 개별 건축계획 등을 포괄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 36조에 따른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의제를 동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수정수용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에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에서 지금 안에는 보시면 4호 사항인데요. ‘문화유산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가유산청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화유산법 35조 제1항 2호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 규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수정안에 반영돼 있고요.

다음, 저희 안의 7호 사항인데요. ‘어촌·어항법 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상에 어촌·어항법 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반영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기본계획 단계가 없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건이고.

아울러서 기후부에서, 8호 사항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개정안에서는 의제 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개별 섬에 대한 검토에 한계가 있고 개발·훼손이 발생할 경우 복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어서, 관계부처에서 신중검토한 부분은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 수정의견이 반영돼 있는 사항은 수정한 상태로 수정안에 돼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개정안에서 의제 규정으로 포함된 사항을 다 반영해서 수정안이 마련돼 있어서 조문대비표상으로는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교통편의 증진 지원 확대에 두 쪽지인데요.

첫 번째, 가. 교통편의 증진 지원 대상 확대 이 사항은 조문대비표상으로 보시면 제13조의3 1항에서, 이게 민간 배가 없는 경우에 행정선을 통해서 지역 주민을 태우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조항인데요. 그 조항에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일부 친척분들이나 섬 지역 주민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태울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이렇게 개정해서 그런 현실적 지역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해소하려고 하는 문제여서, 이것은 기획처나 해수부 쪽에서도 수용하는 안이어서 이 개정안은 받아들여지면 되겠고요.

그다음 23쪽, 나인데요.

이게 선박 구입·수리 등의 비용 지원 조항인데 아까 보신 조항처럼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배로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이 배를 사거나 수리할 비용이 없으니까 이것까지 국가가 재정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3항을 신설해서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이것은 13조의3 2항에 보시면 ‘지정섬 관할 시도지사는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국가 지원분은 없어서 3항에서 국가 지원분

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기획처에서는 이미 2항을 통해서, 2항이 시도지사가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시도에다가 소외도서 향로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설명으로 다시 국가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넣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

24쪽에 보시면 소외도서 향로 운영사업에서 소외도서 주민 향로를 위한 지자체 선박 운영 비용의 50% 이내를 국비 지원하고 있고 선박 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나 유류비, 검사·수리비가 이미 이 사항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안과 딱 차이가 나는 것은 구입비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거여서 지금 현행 지원 부분으로 같음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 관계부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인데요.

26쪽부터, 이것은 아까 모두설명에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각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원구역 행위허가 그다음에 해양이용평가와 관련된 사항 특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건폐율·용적률 적용 특례나 그다음 산지허가와 이용에 관한 행위 규제 이런 것들을 배제하려는 특례, 국공유재산 사용·대부 특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쪽 넣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관계부처 쪽에서는 이런 특례들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제시된 건이어서 그런 특례들이 이 법에 규정될 수 없다면 섬발전촉진지역 정의와 지정 절차 관련 규정도 아울러서 포함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을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부칙사항입니다.

50쪽인데요.

이것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일 이대로 하면 되고 이 이후에, 아까 섬발전촉진구역을 할 경우에 적용 규정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부칙 시행일 규정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아까 26쪽, 수석전문위원은 섬발전촉진구역 관련 조항이 미반영되면 이러한 입법취지가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섬발전촉진구역 지정 및 특례가 새롭게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당위성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관계부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법률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아직 신중검토 의견을 전부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고동진 위원 신중검토 의견의 내용은 뭐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를 들어서 26쪽도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30쪽 보시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적용 특례를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폐율·용적률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자연공원법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자원관리법 같은 경우, 35쪽인데요. 여기에서도 수산자원관리법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배제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데 공유수면과 인접토지에 대한 부분은 행위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 같은 것을 좀 우려하는 건지 해수부에서 또 신중검토 의견 해서 이렇게 이 특례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됐든 현재 관련 소관 부처가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렇다 그러면 관련 부처의 의견이 여기 최형두 의원이나 법안 제출한 사람들에게 피드백이 되고 그런 것을 보완해서 수정 보완할 기회가 있는 거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번에는 이것을 빼고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신다 그러면 차후에 또 협의해서 수정안을 찾아내거나 이렇게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법안심사자료를 봐 주시고요.

이게 저희가 저번 소위 때 심사를 한번 했더랬습니다. 한번 했더랬는데, 2쪽에 보시면 크게는 목차를 보시면 군발법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바꾸고 분과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원회도 규모를 좀 키우고 그다음에 법률 전체적으로 있는 ‘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국정과제의 용어와 일치시킨다는 측면의 개정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 논의를 일차적으로 하시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1차 때의 심사가 있어서 잠시 심사가 펜딩돼 있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부와 의견 조율이 끝나서 다시 심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방시대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을 빼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지방에 외국인 비자 문제나 체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법무부장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자료가 작성돼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수정의견까지는 저희가 저번 1차 심사할 때까지의 자료이고요. 그 이후에 그때 심사 때 나온 위원님들 말씀하고 관계되는 정부의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반영해서 행안부 의견으로 대비표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최종 정부 조율안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3쪽부터 말씀드리면 보고드린 대로 이 내용은 자치분권 정의를 재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명칭을 자치분

권균형성장위원회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이 지금 5년으로 돼 있는데 그 규정을 삭제하고, 이렇게 관련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서 지방시대종합계획도 자치분권균형성장종합계획으로 변경하려는 안인데요.

최종 정부의 입장은 그냥 지방시대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이후에 따르는 행정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현행대로 지방시대위원회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입장이어서 지방시대위원회 명칭을 바꾸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개정안에 나와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바꾸고 그 계획도 그렇게 바꾸고 하는 것들을 다 원복으로,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최종 행안부 의견에는 그렇게 안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을 두는 문제도 이게 관계법상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시대위원회에만 적용치 않는 것은 법 적용 일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두지 않는 것은 최종안에 반영하지 않고 이것도 현행대로 두는 것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다음에 개정안의 취지대로 전체적으로 ‘발전’이라는 용어를 ‘성장’으로 바꾸려는 개정 취지인데 저희가 검토할 때 일부 조항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을 다 찾아서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 사항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게 ‘균형발전’, ‘균형성장’ 이 용어를 꼭 찾아서 넣다 보니까 수정 대비표 양이 좀 많습니다, 내용에 비해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74쪽입니다.

이게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건인데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구성·운영도 좀 확대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39명을 개정안에서는 51명으로 하고 지금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17명이 구조적으로 늘 수 있는 안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그냥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행정부 안에, 아까 보고된 대로 명칭은 원래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구성도 원래 수대로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행안부 의견에 들어 있고, 다만 지금 39명이고 저희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부하고 기획예산처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게 40명으로 됐습니다,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에 따라서.

그것 플러스 1차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교육감하고 법무부장관을 다 넣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것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 그러니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추가하는 것이 개정안에 있는데 그거를 반영하면 42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행안부 의견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행은 그냥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재량사항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행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자치분권이 의제가 너무 소외되거나 약하게 다루는 측면이 있어서 개정안에서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시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자치분권분과위원회하고 균형성장분과위원회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두는 걸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한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되고 있고 이게 딱 2개로 개정안처럼 할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이 좀 경직되는 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처 종합적인 의견은 이것은 받지 않는 걸로 해서 행안부 의견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꼭 반영돼서 수정 대비표상으로 있고요.

다음, 87쪽입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초광역특별협약·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신설하려는 내용인데요.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계획 간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해서 수립 하도록 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고 해당 협약의 관리를 위해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권역별로는 초광역공동사업단을 두도록 하려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5급 3특 이래서 광역 단위로 지역균형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이어서 필요한 사항들인데, 다만 초광역특별회계 이거는 개정안에서 별도로 없어서 정의 규정에 이거를 두려고 하는 건데 본 조항에서 이 초광역특별회계와 관련되는 사항들이 없어서 이거를 정의 규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이 수정 대비표에 반영돼 있고요.

이 개정안의 내용은 받아들이는 형태로, 수용하는 형태로 수정안에 다 들어가 있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방시대위원회나 그 용어를 계속 받기로, 현행대로 두도록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용어들을 다 현행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수정안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입니다.

99쪽인데요. 라의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 건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모든 소관 정책에 대해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사업·기금사업 중에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해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추진 단계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예방하고 국가정책이 균형성장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개정 조치여서 수정안에 반영하고요.

다만 이거를 모든 정책에 다 하기는 좀 어려워서 개정안 1항은 삭제를 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정책하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만 영향평가제도의 대상으로 하도록 대상을 현실화하는 형태로 수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정도로 해도 예산사업하고 기금사업에 들어오는 사업들이 다 포함되고, 플러스 지방시대위원회가 선정한 중요 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국가정책이 포섭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안에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명칭 변경 건은 아울러 따라서 조정돼서 수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입니다.

103쪽입니다.

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하는 건인데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해서 초광역권에 대한 원활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에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

록 해서 균형성장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여서 타당한 입법 조치고, 다만 저희 수정안에 낸 내용들은 지역지원계정, 자율계정, 세종계정, 제주계정이 쪽 있는데요. 그 규정하고 아귀를 맞추는 수정조치들이 필요해서 그런 조항들을 다 반영 해서 수정의견에 넣어 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23쪽입니다.

포상금 및 자치분권 기본이념 조항인데요.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날과 연계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에 대해서 규정을 추가하려는 안입니다. 이것도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활성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항이어서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다 받아들이고, 다만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날’ 용어 자체가 각종 기념일 등에 있는 규정상의 용어와 맞지 않아서 그것과 일치시켜서 수정안에 넣어 뒀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방자치 및 균형성장에 관한 법정 기념일과 연계하여’ 이런 표현으로 수정해 뒀고. 그다음에 개정안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바꾼 것 이런 것도 추가로 수정해서 넣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입니다.

127쪽입니다.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되도록 해 뒀는데요. 이게 저희 아까 보고드린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정부 쪽에서는 한 3개월을 추가하는 것이 준비기간에 좋겠다고 해서 그것과 맞춰서 수정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초 광역특별회계 계정을 넣었는데요. 이거는 예산 회계연도하고 좀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서 아예 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나머지 각종 계획 및 위원회나 경과조치 이런 것들은 필요한 사항이어서 넣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 제출 특례나 연차 특례 이것들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경과조치들이 필요한 조항들이어서 지방시대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면 필요 없는 조항이어서 그거는 수정안에 반영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넣지를 았고, 그다음에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하고, 법적 기술적 측면에서 다른 법률의 사항으로 하고 지금 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해서 수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인 안은 저희가 1차 심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견이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하고 정부에서 최종 조율한 결과 내용은 이 대비표상의 행정안전부 의견으로 들어가 있는 워딩으로 받아들이시면, 이걸로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다 공감을 하고요. 신중검토 의견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이라든지 계획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행정안전부 의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존속기한 삭제도 행정기관 위원회법을 감안했을 때는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5년의 존속기한이 있고 필요 시 계속 연장해 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치분권·균형성장 분과위 설치도 이렇게 굳이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재량으로 할 수 있고요. 위촉직 위원 확대도 너무 많아지면 좀 비대화되고 비효율화될 게 있어서 현행 유지 의견, 이걸 빼고 나머지는 전부 수용이거나 일부 수용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 법안은 지난 25년에 저희가 한번 토론했던 법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그때 토론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문제 제기를 좀 받아서 정부 측에서 일종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용어상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행정 할 때 항상 체크하는 게 입에 익었어요. 군발법에…… 모든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이런 행정을 할 때 군발법에 이게 저촉이 되는지 또 그 안에서 보호가 되는지 이런 익숙한 용어들인데 새 정부 들어와서 균형성장으로 이렇게 다 용어를 바꾸면 또 굉장히 새로운, 새로운 과제들이 그 안에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으로 균형성장이라는 용어를 채택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정말 그냥 새 정부가 하는 예전에 있던 용어 같이, 포장 같이만 할 게 아니고 투자전략이라든가 이 수도권하고 이런 관계에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이름만 바꿀 게 아니고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께서 잘 새겨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이름 바꾸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달희 위원 예, 이름에 맞는 역할이나 정책이 확실하게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헌법 119조가 경제 관련 조항인데 ‘국가는 균형 있는 경제 성장과 안정’ 그러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을 119조에 하고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이름을 바꾼 것이어서 균형발전의 취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고 또 5국 3특이 결국은 성장전략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를 성장시키는 또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거여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 법명도 좀 바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 때 누락시켰는데요. 법 제명도 저희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해식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한 가지만……

분과 관련해 가지고 재량으로 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2개 법이 합쳐지면서,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하고 균형발전특별법이 합쳐진 게 이 법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위원님.

○이해식 위원 그런데 이 2개를 합쳐 놓고 보면 결국은 자치분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축소되고 잘 주목을 받지 못하고 활동력도 미약하고 이렇게 될 게 뻔하다. 왜냐하면 균형성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위원도 많고 또 각 부처, 관계된 부처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일들이 거의 대부분 균형성장 쪽에만 가 있을 거다 이런 의견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과소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분과위원회라도 이렇게 좀 고정적으로 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재량으로 두는 게 낫겠다고 했다면 그러면 실지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점들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균형성장위원회에 분과가 균형성장 쪽에 2개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자치분권 쪽에도 2개 정도를 뒤서 균형을 맞춰야지 여기 지금 74페이지 한번 보시면 현재 자치분권·균형성장 외에도 경제산업·생활공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4개가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렇게 4개 분과위원회가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경제산업·생활공간 이게 균형성장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도. 그러면 벌써 분과위원회 운영하는 데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자치분권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면서 주민자치 개념을 우리가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자치분권 영역에서 주민자치분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분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정분권이니까 재정분권분과를 두어 가지고 어떻게 재정분권을 조금 더 진전시킬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과위원회 운영할 때 이것도 좀 균형 있게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를 꼭 좀 명심하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4개의 분과위가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또 아시겠지만 행안부, 산업부, 기획처, 국토부가 관련돼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끌고 가고 있는데 사실 4개 분과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균형성장분과위와 경제산업분과위는 맥락이 균형성장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진 거고요. 자치분권분과위하고 생활공간분과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공동체를 어떻게 지원해 갈까 하는 부분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계부처나 여기 협의해 나갈 때도…… 자치분권분과위가 원래 2개 위

원회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위상이나 권한이 좀 갈 수 있도록 또 새로 위원장님 오시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시는 부분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든 여러 가지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 주시면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생활공간분과가 꼭 그렇다고 보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해식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한 지방시대위원회 안전을 보면 거의 80% 이상이 균형성장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 부분 더 저희가……

○**이해식 위원** 그래서 운영 자체를 균형 있게 해 가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23페이지, 기념일은 그냥 이름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게 현재 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10월 29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맞추어서 ‘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수정하는 것을 협의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 얘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특별한 의견이……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늘 논의할 안건이 많아서요. 중복되는 건 제외하시고……

○**이광희 위원** 저는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치분권도 같은 말이 전혀 아니에요. 분권은 균형성장에 오히려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개발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거의 이 위원회의 90% 이상이…… 아니, 거의 자치가 없어요. 자치와 참여를 주도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현재 이 법 가지고는 자치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의 지역소멸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걸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곳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성장했었던 혁신도시나 몇몇 특별자치도 외에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 개라도? 주민 참여의 성공사례가, 10년 이상 성공했던 사례가 한 개라도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다 주세요.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방자치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단체장들만의 자치지요. 저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절박합니다, 정말. 129개인데요. 이게 10년 안에 이만큼 된 거예요. 이 정도 속도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하거나 살려 나갈 이런 것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위에서 뭔가 내려 주는 사업만으로 버틸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균형발전과 자치분권과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따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좀 남깁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마무리 해 주시고요.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위원회 구성.

이게 어떤 헌법기관 또는 어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지금 보면 국회의장 추천 4명, 대통령 추천 17명인데 이것을 더 벌려 가지고 국회의장 4명, 대통령 27명 이렇게 4대 27로 하자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추천하고 이렇게 4대 27로 너무 간극이 크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것도 좋지 만 국회의장님이 추천하는 몫을 비율적으로 좀 조정해 가지고 더 늘리는 것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래서 77쪽에 보시면 27명이 다시 17명으로 조정돼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4대 17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도 답변이라도 좀 들었으면……

○소위원장 윤건영 이 부분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특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게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던 여러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해당 부처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 구성이 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이자 우리 모두가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이 다 마찬가지로 여서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배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들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이 개정안은 저희 소위 심사를 한 번 했고 지금 다시 하는 건데요.

도농복합시 동의 읍·면 전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현행에 보시면 읍 설치 기준이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은 읍 설치의 기준인데 예외사항으로 인구 2만 미만의 경우에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이거나 읍이 없는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은 읍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예외사항에 표에 보시면 개정안에는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 변화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하는 경우를 넣어서 도농복합시가 되면서 옛날 읍이었던 게 동으로 전환된 지역을 다시 읍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을 내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읍하고 영산포읍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사항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내신 거고요.

5쪽 보시면 전라남도 나주군 나주읍·영산포읍이 81년도에 금성시로 통합승격이 됐고 86년도에 금성시가 나주시로 개칭되고 95년도에 나주시하고 나주군이 통합됐는데 이 점을 감안해 보면 여기 개정안에서 시 설치 이전이 금성시로 될 때인지 아니면 95년에 도농복합시로 될 때인지가 좀 불분명한 점이 생겨서 종전의 읍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수정의견을 그리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인정되는 특례들이 있는데요. 참고사항 4쪽입니다. 참고자료 보시면 양도소득세부터 시작해서 대입특별전형까지 있는데 기존에 읍이었던 지역이 이렇게 동이 되면서 이런 특례들을 못 받게 되면서 이것을 원복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이렇게 내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일부 종전의 읍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해서 표현을 좀 명확화해서 수정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식 위원 차관님,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지금 나주시 구영산포읍 지역이 있고요. 하나 더가 군산시에 구미성읍 지역이 있습니다. 신관·개사·산북·내초동 4개가 합쳐져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군산시는 지금 영산포같이 환원해 달라는 동향이냐 그런 의견은 없어서 이것 한 개만 일단 하면 다른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을 낸 것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신중검토 의견들이 많아서 그리고 시간 제약도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의사일정 제25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올려서 논의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자료가 배포가 됐나요?

○고동진 위원 이것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다음 순서대로 즉 진행이 됩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법 이렇게 갑니다. 우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법으로,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5·18 자료 없는데……

○소위원장 윤건영 행정실에서는 위원님들께 자료……

법안심사자료 제목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양부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지난 2021년 5월에 헌법재판소가 동법상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22년 12월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단서조항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5·18 유족 등 854명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등 당시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이 내려지고는 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진 2021년 5월 이후 3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경우에 청구소송의 주관적 기산점에 기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역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5·18 유공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게 될 경우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동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희생자 등의 권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고 특히 주관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던 피해자들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쪽을 보시면 다만 22년 12월 동법 개정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하면서 부칙으로 동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 보상심의위원회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24년 5월 기준으로 3년이 도과하여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할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 부칙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적용례 관련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배상청구권을 놓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소멸시효 배제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적용례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심사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이 2쪽에 보시면 총 5건인데요. 신정훈 의원님 안은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내셨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일부 조항에 대한 개별 법률입니다.

지금 현행법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는 제명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 범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추진체계,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2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신정훈 의원님 안하고 일부 의원님들이 이게 봉사활동이라고 하니까, 지금 정의 규정 보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이런 활동이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 어문 정의상 보면 노력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이런 행위만으로 해석이 되고 활동이 이렇게 돼서 온라인상으로도 그다음에 재능, 기술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포함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법률 제명을 ‘자원봉사활동’에서 ‘자원봉사’로 바꾸고, 법안에 있는 전체의 정의 규정이나 첫 번째 목적 규정부터 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돼 있는 것을 전부 다 ‘자원봉사’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국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을 포섭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현장에서 또 실제 외국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용어를 정비하면 좋겠다는 취지가 조금 있고.

기타 개별 수정이 필요한 조문들을 조금 수정하고 조금 더 추가가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해서 전부개정안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1개 조문 중에 10개 조문 개정하고 4개 조문을 신설하는 형태로 들어와 있고, 신정훈 의원님의 전부개정안과 같은 조항의 수정 내용을 담고 계시는 의원님 안도 있고 또 다른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원님 안들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자원봉사가 죽 올라오다가 2020년 코로나19 기점으로 좀 떨어지면서 이후 회복되지 않는 현장 통계가 있어서 전문 개정을 통해서 이런 추세를 좀 바꾸고자 하는 취지가 전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감안해서 가급적 내용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5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제명 및 목적, 기본 방향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이나 기본 방향 여기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다 변경하고 그 다음에 ‘국민’으로 자원봉사를 물고 있는 부분을 이성권 의원님 안은 ‘개인 또는 사람’으로 개정하자는 안이고 신정훈 의원님 안은 ‘시민’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차이만 있는 내용인데요.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해서 좀 더 큰 개념으로 포섭하는 것에서는 이의가 다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국민’을 ‘개인 또는 사람’으로 바꿀 거냐 ‘시민’으로 변경하실 거냐 이 부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을 포섭하려는 이 취지로 보면 ‘국민’보다는 두 개정안 쪽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은데 궁극의 가장 큰 범위의 개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시민으로 갈 거냐 이것을 결정하시는데 ‘개인’으로 하면 굉장히 큰, 가장 큰 단위로 포섭이 되는 장점이 있고 ‘시민’으로 하면 어차피 자원봉사가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개념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기본 방향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의 자원봉사 노력을 증진하는 이런 개념적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시민’이 조금 더 좋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일단 수정안은 ‘시민’으로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0쪽입니다.

나.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부분인데요.

이것은 신정훈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인데 정치활동 등이 금지되는 대상에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등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스 보시면 현행에 ‘14조, 18조, 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 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국가 지원을,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하고 물리게 하려고 14조, 18조, 19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신정훈 의원님 안에서는…… 14조 자체가 종합보험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 사실상 모든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가 다 포함될 수 있으니 이것을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개정안인데요.

현행법 제2조제2항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비정파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고 금지 대상인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으셔서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는 형태로 하고 현행대로 하는데 이게 전부 개정하다 보니까 조문들이 이동해서 조문의 조가 바뀌는 건데 현행 내용과 동일하게 하고요.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용어 변경하는 것은 그에 맞춰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인데요. 신정훈 의원님 안 7조 관련 사항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현행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지역사회 개발·발전’ 중 해서 나열하고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나열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자원봉사의 유형을 다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하에 규정 방식을 아예 바꾸어서 안 되는 것만 하자, 되는 것을 규율하지 말고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것만 규율하자라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은 영리적 활동, 정파적 활동, 종파적 활동 등을 제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제외되는 자원봉사가 아닌 것이 결국은 또 시행령에서 즉 나열되는 문제가 있어서 원래의 취지가 해결되지 않는 면이 오히려 있는 점이 있고 또 이미 기본 방향에서 자원봉사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개정안의 방식을 저희가 수정하는 형태로도 한번 해 봤는데 적절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고민해 본 결과 행안부에서는 이걸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2항을 신설하는, 그러니까 1항에서 즉 나열하고 있는 자원봉사의 유형이 온라인 형태로도 진행된다면 자원봉사로 포섭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수정되면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수정안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5쪽입니다.

라.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과 협의 및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건인데요.

개정안에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명칭을 이것도 활동이니까 자원봉사로 바꾸는 것이 하나 들어가 있고 행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 협의 대상에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개정안입니다. 이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고요. 다만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을 법제적 용어로, 전체적으로 광역 시도만 돼 있는데 저희 특별시도 있고 통합특별시도 있고 특별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개정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역별로 시행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재량사항으로 넣어 주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행안부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그 내용이 포함돼 있고, 현재도 시도하고 시군구에 실질적으로 지방위원회들이 설치, 모든 자치단체가 다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있어서 재량사항으로 넣어 놓으면 필요한 지역은 알아서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해서 수정안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 20쪽입니다.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포상 및 인력 양성 부분인데요.

신정훈 의원님 안에서 포상의 대상에 자원봉사관리자를 포함하고 자원봉사관리자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성일중 의원님 안에서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

리자 연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포상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정훈 의원안이 자원봉사관리자를 명시하자라는 것인데 자원봉사관리자가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게 정의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법에다가 명시하기에는 일정 제약이 있고, 다만 현행법에서 ‘등’으로 돼 있어서 실제 포상 행위에서는 자원봉사관리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현행 규정처럼 ‘등’으로 해도 이 입법취지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개정안에는 넣지 않고, ‘봉사활동’ 이것은 ‘봉사’로 수정하는 걸로 수정안이 돼 있고.

나머지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 양성 부분은 자원봉사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넣고요, 수정안에 반영은 돼 있고. 다만 연수시설 설치 부분인데 개별 연수시설 설치 규정을 명시할 거냐와 관련해서 이렇게 명시하기에는 기획처가 이게 문제가 있다, 국가 주도로 직접적인 교육시설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돼 있어서 이 연수시설 설치 개별 조항은 삭제하고 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면서, 사실 이 인력 양성과 관련되는 어떤 일들을 국가 지원 부분도 이 안에서 포섭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고흥군에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자원봉사 연수시설이 지금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자본보조의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전문인력 양성 노력 의무 규정으로 실제 행정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봐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25쪽입니다.

바. 자원봉사자 인권보호, 손해보상 및 국가배상책임 등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신정훈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인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하고 봉사활동 중 자원봉사자의 손해에 대한 지원·보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및 국가의 구상권 행사 금지 조항을 신규로 하려는 것인데요.

먼저 인권 옹호 책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원님 안에 자원봉사관리자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자원봉사관리자 개념에 대해서 합의가 현재까지는 안 된 사항이니 법률 사항에 포함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냥 ‘자원봉사자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입법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안에 넣었고요.

나머지 자원봉사자 손해보상 규정은 이미 현행법에서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제도를 두고 있어서 그 제도로 이 취지가 갈음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정안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국가배상책임 및 구상권 행사 금지 조항인데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행정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인정되고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보아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려는 제도 설계인데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이 조항이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집행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는 국가배상 제도의 체계에 들어오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정안에는 이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좀 속도감 있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다음, 30쪽입니다.

사. 자원봉사 관리 영역 확대인데요. 신정훈 의원님 안에 있는 건데 기존에 자원봉사활동 관리에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체계적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및 위험 예방, 인정과 홍보, 재난 봉사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촉진’ 이걸 조금 더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이 개정안은 수용해도 무방하고, 다만 ‘욕구’라는 표현을 ‘요구’로 바꾸는 것이 용어상 적절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국유·공유 재산의 특례 확대 조항인데요. 이것은 이달희 의원님 안에 국·공유 재산의 무상대여·사용 대상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포함하려는 것이고, 신정훈 의원님 안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여·사용 요건을 완화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무상대여·사용에 포함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먼저 이달희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단체의 정의가 3조에 있는데요.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자원봉사협의회도 이 정의 규정에 이미 포함되는 걸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현행법 속에 이미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고 행안부도 여기 봉사단체에 자원봉사협의회가 포함된다라는 것으로 같이 이해하고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특례 요건 완화 관련해서는 이것은 민간이 부담해야 할 사무실 임차료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전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상대여·사용에 포함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나 지금 센터를 직영하는 것을 이후 조항에서 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민간위탁하고 법인 설립해서 공동 운영하는 부분만 있는데 이제 민간위탁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돼서 과도한 무상대여·사용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수정안에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35쪽,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지원 확대 조항인데요.

이달희 의원님께서서는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의 대상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추가하려는 것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자원봉사단체에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고 집행한다면 현행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제로도 유엔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해서 K-자원봉사단 운영 5억 보조금 등 이런 것을 편성해서 협의회가 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해 보면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말고 자원봉사협의회 이 조항에 자원봉사의 역할들을, 36쪽 대비표에 보시면 죽 있는데 여기 제17조 2항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넣어보려고 저희가 수정안을 좀 고민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여기까지 넣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수정

안에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차. 자원봉사센터 직접운영 폐지 및 전문인력 채용, 명칭 등에 관한 건데요. 왼쪽 개정안의 주요내용 표에 보시면 현재 운영 방식이 민관공동, 민간위탁, 직접운영이 있는데요. 단서조항으로 있는데 이걸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영운영과 관련해서 지자체장 임기 만료에 따른 센터장 교체나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신 안인데 그건 그렇게 수정안에 수용하는데 다만 현장에서 조금 이게……

대부분의 자원봉사센터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마다 운영 여건이 굉장히 달라서 실제 현장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3년간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수정의견에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채용 의무 부분은 신정훈 의원님 안에서 조금…… 현행은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 자원봉사센터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왔는데 센터장이 아니고 전문인력 채용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현행은 센터장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전문인력들은 각 도 조례에서 각 지역 여건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지역 실정을 감안한 수정 조치여서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반영되었고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명 자원봉사센터 명칭을 부여하고 이 지역명 중복 사용 금지하는 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수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43쪽 카.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건인데요. 자원봉사센터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으로 수정안에 포함하고 다만 법제 기술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법에도 불구하고’라는 용어를 넣는 것이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그렇게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인데요.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관련 시스템 연계 요청, 민간위탁 등을 규정하려는 건데 현재 행안부가 운영하고 있는 1365 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넣고, 다만 통계 작성과 관련해서 2026년 1월 27일부터 자원봉사 현황이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되어서 통계 작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및 성평등가족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아울러 필요해서 그 부분을 추가해 봤고 법제 기술적으로 전자정보시스템임을 밝히고 그런 쪽으로 수정해서 수정안이 제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2쪽의 부칙 부분입니다.

6개월, 공포 후 즉시 이견 사안에 따라 조금 시행일이 다르게 나와 있고요.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하고, 다만 아까 직영운영 삭제하는 조항은 현장 의견을 받아서 3년으로 시행 유예하는 그 경과조치를 반영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대로 대부분 동일합니다. 사전에 5개의 의원 발의안이 있는데요. 정부가 협의를 해서 수정안으로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시민’으로 할 거냐, ‘개인’으로 할 거냐인데 ‘시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근대적인 느낌 같아요.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자발적이고 또 자기 개인이 우선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청소년들 생각에 나는 시민, 보통 시민권자 뭐 이런……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아직 어리고 이래서 자원봉사 여기에 ‘시민’을 넣는다면 나는 나중에 자라서 시민이 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개념이 좀 있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자발성을 유도하려면 ‘개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저는 정부의 수정안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신정훈 의원안 중에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이걸 저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게 여기 법의 정의를 보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범위를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게 이걸로 다 규정이 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14쪽에 보시면 15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괄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신정훈 의원님 안에도 결국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통령령에 지금 있는 내용들이 또 이렇게 열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에 온라인상에서의 봉사활동도 추가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건 추가한 겁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신정훈 의원안으로 하고 이 내용들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해서 이후에 필요시…… 왜냐하면 이게 점점점점 범위가 확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그걸 대통령령으로 수정하면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내 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21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의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기획예산처 검토의견인데 그 앞에 같은 21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고흥군 마리아노와 마가렛 나눔연수원 이걸 50억 지원한다고 행안부가 결정했는데 이 결정 배경은 뭐예요, 법적 근거하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마리아노와 마가렛은 아시겠지만 고흥에 소록도 있지 않습니까? 이 수녀님 두 분이 평생을 와 갖고 하셔서 대한민국에서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하고 그랬던 분인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투병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적 자원봉사의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행안부에다 계속 건의를 했고 당시 아마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봐 주셔서 24년에 기본설비……

○**고동진 위원** 아니, 알겠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때는 특별히 법적 근거라기보다도 취지를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연수시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지금 이 안은 성일중 의원님 안이기 때문에 태안의 과거 기름유출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도 연수시설을 좀 놓자 이런 부분인데 일단 하나 만들어져서 운영이……

자원봉사 교육이 막 일주일, 2주일씩 이런 장기교육은 아니고 1박 2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교육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기 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6년, 27년에 오픈을 해서, 개장을 해서 봉사 실적이나 교육 실적을 보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추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기획예산처 입장입니다.

○**고동진 위원** 바로 그 점인데 그러니까 성일중 의원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봉사 실적이라든가 거기서 사람들을 진짜 교육하고 민간 운영을 통해서 그렇게 양성한 실적을 5년이나 10년 보고서 그다음에 결정해도 좋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위원님.

○**고동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을 아예 없애는 게 좋은지 아니면 민간에서 운영되는 실적이라든가 경과된 시간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게 오히려 낫지가 않아요, 여유를 두는 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여기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재량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 행안부는 그래서 이 정도 규정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기획예산처는 그래도 이런 규정으로 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까 봐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연수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실적을 보고 일정 시간 경과한 이후에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기획예산처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그런 내용이 수정안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하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연수시설 이런 표현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고동진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업데이트를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갖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아까 수석께서도 얘기하고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따로 이렇게 넣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차관님, 행안부 산하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 관련해서 이런 비영리단체가 몇 개 있나요? 자원봉사 2개 정도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건 자원봉사……

○이달희 위원 그냥 센터만 있어서 얼마 전에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하나 등록돼 있고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등록돼 있는데 그리고 그냥 지역 자원봉사 센터가 각 시도에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시군구까지 다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시군구에 있는 걸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있는 거지요, 중앙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중앙만이고요. 중앙만 재단법인이고 나머지……

○이달희 위원 나머지는 시군에서 다 관리하고 또 민간위탁하거나 직영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우리 사회에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때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새마을이나 적십자 다 모여서 이 자원봉사 체계를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라는 개념에 그냥 들지만 여기는 아주 효시적인 단체로 지금도 여기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 우리가 법으로 할 때…… 기재부가 반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안부는 어제 저녁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안에 들어 있어서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게 삭제가 됐는데……

우리가 보통 입법 할 때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기재부나 이런 데 가서 설명할 때 이 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지위를 인정해 줘서 그런 사업서를 가지고 올 때 하나의 인정서 비슷한 거지, 계속 ‘줘야 한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 정도는 넣어 놔야 사업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20년 가까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그런 어른들이 다 모여서, 여기 안에 드는 단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의적으로 앞으로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제 초안으로 내놓은 것처럼, 초안을 우리 의원실에 보낸 것 보니까 ‘줄 수 있다’고 보냈더라고요. 이 안은 ‘국가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이끌어 내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헌한 부분만 해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지위를 갖춰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35쪽을 보셔도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현재 정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1억 2700만 원씩 계속 받아 오고 있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하나가 아니라 한국자원봉사단체의 연합회적인 측면이라서 여기에 있는 단체들도 한 십여 개로 또 있고 거기 밑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자원봉사 업무도 한 3년 가까이 직접 해 봤는데 협의회 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봤듯이 자원봉사협의회가 현재 자원봉사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특별히 언급해야 될 실익이 없지 않냐,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위원님은 구체화시키면 더 확실한 지원 근거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봉사협의회가 19년 내지 20년 된 단체인데 우리나라를 이끌던 분들이 다 모여서 이 협의회를 해서 우리 한국 자원봉사 체계를 좀 갖추자고 시작한 건데, 법적으로 그냥 ‘할 수 있다’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할 때마다 예산 확보라든가 작은 사업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여기에 법적 근거를 좀 넣어 달라고 하니……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작은 단체 하나가 아닙니다. 협의회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고 넣어도 무방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 단체와 관련해서 특정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 소위에는 안 맞을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앞서 이달희 위원님이 ‘개인’이나 ‘시민’이나라고 이야기해 주신 게 아직 안 풀렸는데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는 일단 ‘개인’과 ‘시민’을 고민해서 ‘시민’이라는 것이 더 법률상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 해서 수정안에 의견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상식 위원** ‘개인’이라는 말도 좋지만 ‘시민’이라는 말이 지역사회와 국가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시민’이라는 표현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시민’이라 하면 어떤 정치적 혹은 역사적, 인문학적 개념으로 보면 숙성됐었던 시민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개념이 개별적인, 자발적인 개인의 활동을 강조한다고 봤을 때 시민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넣기에는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달희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게 뭐 크게 토론할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광희 위원**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토론할 영역은 아니지요. 정하면 됩니다.

○**고동진 위원** 그것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달희 위원님이, 저도 얘기 들어 보면 현재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매년

예산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일 텐데, 실제 지원은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로 해줘서 원활하게 지원받게 해 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이상식 위원** 그 단체의 역할은 저도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의 처분성 법률 같은 느낌도 조금은 듭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예산 때문에 뭘 하는 그 자체는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협의회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고동진 위원** 해 달라고 그러는 것 많이 반영해 줬으니까 하나 좀, 사람들이 그렇게 솔티(salty)하게……

○**소위원장 윤건영**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시민과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으로 정리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안대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8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소위원회 심사는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률안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위원,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고동진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재관 이해식 정춘생 채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